##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11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 박수현 · 윤종오 · 이개호

한정애 · 김윤덕 · 양부남

조계원 • 윤후덕 • 박용갑

이건태 · 신영대 · 이연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의 구조로서,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상의 소추를 통한 형사책임을 묻고, 재직 중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심판을 받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의 구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 추를 전제로 한 수사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위헌·위법 행위(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법적 책임추궁이 아니라 탄핵심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이러 한 규정들의 취지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의 경우 대통령 재직 중에는 그 절차가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및 제306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5조의11(대통령 재직 중의 수사) 대통령이 피의자(피내사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는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취임 전 개시된 수사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 수사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30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 임기 중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개 정 안  제245조의11(대통령 재직 중의 수사) 대통령이 피의자(피내사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내 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에 는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第306條(公判節次의 停止) ① ~ ⑤ (생 략)	다. 이 경우 취임 전 개시된 수 사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 수사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第306條(公判節次의 停止) ① ~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⑥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 임기 중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